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41

발의연월일: 2020. 7. 13.

발 의 자:김성주·홍성국·이원욱

조응천・허 영・강병원

최연숙 • 기동민 • 이상헌

임호선 · 강선우 · 한정애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는 감염 초기 높은 전염력으로 사스·메르스 등의 감염병과는 확연히 다른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음.

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전망되는 가운데,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전까지 산발적 소규모 감염 및 대규모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.

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일수록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가 큼.

이에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가. 의료인,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도입 (안 제49조의3제1항)

감염병에 따른 "심각"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의료인이 환자·의료인·의료기관 등을 감염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,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.

나.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(안 제49조의3제2항)

보건복지부장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,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할 때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상황에 맞는 효율적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함.

다.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지원(안 제49조의3제3항)

감염병 위기 상황 시 시행한 비대면 진료 과정 등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 비용을 지원할수 있도록 함.

#### 법률 제 호

#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3(의료인,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)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(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감염병에 관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,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선·무선·화상통신,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,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에 따른 한시적비대면 진료의 지역,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

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지원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)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(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만 해당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)은 감염병에관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, 의료인 및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선·무선·화상통신,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관찰, 진단 및 처방을 할 수있다.	현 행	개 정 안
(9) H Z 보 기 브 자 이 이 히 최 히		제49조의3(의료인, 환자 및 의료 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 면 진료)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(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만 해당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)은 감염병에관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, 의료인 및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선·무선·화상통신,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관찰, 진단 및 처방을 할 수

<u>의견을 들어 제1항에 따른 한</u> <u>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, 기간</u> 등 범위를 결정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조치 과정에서 의료 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으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 보 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 조할 수 있다.